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09. 0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898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혜련 의원(발의의원 27명)
- 나. 제안일 : 2019. 08. 07.
- 다. 회부일 : 2019. 08.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 나. 주요내용

-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 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제1항제5호).
-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5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바,
- 조례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중 안전과 인권보호 사항 (안 제5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p>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p> <p>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p> <p>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둘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p>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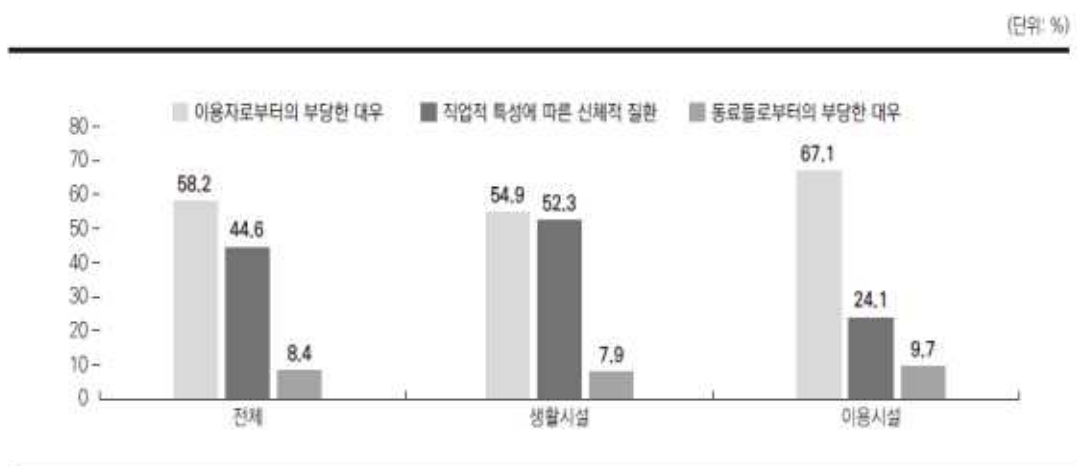
-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sup>1)</sup>”라는 것이 핵심개념으로 시대와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을 발표한 이후로 인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인권은 사회복지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경제·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확대<sup>2)</sup>되어 가고 있음.
-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할 때 거론되는 문제점이 i) 사회복지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의 지위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ii)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 iii) 일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비전문성과 비민주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수혜대상자 또는 민원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는 바, 실정이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방안 및 보상방안이 마련 되어만 함.

1) Jim Ife, 2006,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 기회와 도전, 국가인권위원회(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3-43.

2)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pp. 319-317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보조금이라는 사회복지체계 구조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과위주 및 실적 위주의 관리통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존재하며,
-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인 조직체계, 의사소통의 부재,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결여 등의 문제로 관리자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체계내에서의 보장으로 여겨지므로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여지며, 조례에 따른 안전과 인권보호의 대상자가 사회복지사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시설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시설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p>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p> <p>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근로욕구 감퇴 및 이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시설별 표준화된 지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개입이 필요함.
- 종사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및 인권침해 관련 지침, 내부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과 지원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안정 지원사업”과 같은 구체화 된 대상자 및 사업의 명확화는 향후 고려해야 할 사안<sup>3)</sup>으로 보여짐.

### 3 종합 의견

-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동안의 주된 논점은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이었음.
-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으로서의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

3)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직업장 보건 및 안전법’ (10가지 위험요인과 실천규칙Code of Practice)이나 독일의 ‘노동재해 예방 전략’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안전법’ (메사추세츠주, 켄터키주, 버지니아주)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 제도 도입 검토 고려할 사안이라 보여짐.



하고 있는 ‘사상,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 배제 또는 불안정한 고용 증가, 폭언폭행 및 감정 노동 등의 문제도 등가치하게 보장되어야 함.

- 개정안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회보장체계 내로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